

연송치의학상 규정

제정 : 2004.12.21

개정 : 2006. 1. 9

2008. 9.11

2010.12.17

2011. 3.18

2012.11.21

2013. 7. 4

2017.11.28

2018. 9.12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대한치의학회가 제정하고 (주)신흥이 후원하는 연송치의학상의 시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상의명칭)

본 상의 명칭은 "연송(蓮松)치의학상" 이라 칭한다.

제3조 (수상부문)

연송치의학상은 "대상", "연송상", "치의학상" 부문으로 구분한다. (개정 2018. 9.12)

제4조 (수상인원)

수상자는 "대상", "연송상", "치의학상" 각1명으로 한다. (개정 2018. 9.12)

제5조 (수상대상 및 자격)

수상후보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치의학 연구에 종사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(이하 '협회') 정관에 의한 의무를 다한 회원 중 추천 공고 직전 최근 3년 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 학회지 또는 대한치의학회 영문학회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의 논문이 게재된 자료 선정한다. (개정 2018. 9.12)

제6조 (심사 방법)

① 수상후보자는 공고 직전 최근 3년동안 SCI 등재 및 SCIE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 발표업적(편수)이 현저한 자료 선정한다. (개정 2018. 9.12)

② 점수부여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. (개정 2018. 9.12)

- 논문 1편당 SCI(1점)

- SCIE(1점)

- IF(Impact Factor)의 구간별 가중치 적용

- ③ 대상은 논문 편수와 IF(Impact Factor)를 합산하여 평가한다. (개정 2018. 9.12)
- ④ 연송상(기초), 치의학상(임상)은 SCI 및 SCIE의 논문 편수로만 평가한다. (개정 2018. 9.12)
- ⑤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논문점수를 저자 숫자로 나누어 계산한다. (개정 2018. 9.12)
- ⑥ 후보자가 제출한 논문 중 공동저자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. (개정 2018. 9.12)
- ⑦ SCI, SCIE의 논문이더라도,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논문의 정성평가에 따라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. (개정 2018. 9.12)
- ⑧ 총 평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대표논문의 IF(Impact Factor)가 높은 후보, 제1저자 편수가 많은 후보를 우선 선정한다. (개정 2018. 9.12)
- ⑨ 대상 수상자는 평생 1회에 한하고, 연송상 및 치의학상 수상자는 7년 이후에 수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. (개정 2018. 9.12)
- ⑩ 기타 수상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8. 9.12)

제7조(수상후보자 추천) 수상후보자는 소속 기관장 또는 분과학회장의 추천서와 해당논문(저자, 제목, 게재지, 쪽수, 연도)의 목록 및 논문 파일을 제출한다. (개정 2018. 9.12)

제8조 (추천서 접수)

매년 12월 중 공고하여 2개월 내로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.

제9조 (심사위원회 구성)

- ① 심사위원회는 치의학회 부회장 2인(위원장 포함)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수련고시이사, (주)신흥에서 추천하는 위원 2인 등 7인으로 구성한다.
-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치의학회 임원의 임기로 한다.

제10조 (수상자 결정)

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치의학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치의학회 총회에 보고 및 협회 이사회에 통보한다.

제11조 (상의 수여)

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.

제12조 (시상일 및 장소)

시상은 매년 치의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13조 (심사료 지급)

심사위원회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.

제14조 (준용내규)

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대한치의학회와 (주)신흥이 공동으로 서명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대한치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3. 본 규정 제5조의 단서조건에 “추천 공고 직전 최근 3년 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 학회지 또는 대한치의학회 영문학회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편의 논문이 게재된 자”에 대해서는 2018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